

인천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209562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성 담당변호사 안성준

**피고**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정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범규

**변론 종결** 2020. 11. 10.

**판결 선고** 2021. 2.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0,782원, 원고 B에 대하여 4,731,4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853,91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3,657,0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C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7. 11. 3. 인천지방조달청과 공사명 'D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 피고, 시공방법 공동이행방식 [대표자 회사 주식회사 C, 출자지분율 주식회사 C 50%,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3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19%], 계약금액 1차 공사 7,493,092,000원, 2차 공사 1,846,690,800원1), 총공사부기금액 9,339,792,800원, 착공일 2017. 11. 30., 공사기간 금차 420일, 총공사 420일, 준공일자 2019. 1. 23.,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0.05%,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2),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계약의 일부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착수 이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주식회사 C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과다, 자재·정비대금 미지급, 기성 및 공사이행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들은 2018. 7. 24.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 탈퇴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25. 위 중도탈퇴 요청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2018. 7. 25.까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 기성액을 1차 공사 1,241,226,000원(1차 공사 기준 기성고율 16.56%), 2차 공사 0원, 합계 1,241,226,000원(전체 공사 기준 기성고율 13.29%)으로 각 산정하여 주식회사 C에 기성금으로 620,613,000원(1,241,226,000원 × 50%)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 및 주식회사 C이 기성검사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8. 8. 27.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지분율을 1차 공사 원고 A 주식회사 72.72%, 원고 B 주식회사 19%, 주식회사 C 8.28%3), 2차 공사 원고 A 주식회사 81%, 원고 B 주식회사 19%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차 공사에 대하여 2019. 2. 7., 2차 공사에 대하여 2019. 4. 3.경 준공을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준공기일 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1차 공사에 대하여 15일(2019. 1. 24. ~ 2019. 2. 7.)의 기간에 해당하는 56,843,700원(=7,579,159,000원×0.05%×15일), 2차 공사에 대하여 69일(2019. 1. 24. ~ 2019. 4. 3.)의 기간에 해당하는 67,667,300원(=1,961,371,000원×0.05%×69일), 합계 124,511,00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지체상금 100,853,910원, 원고 B에 대하여 지체상금 23,657,090원을 상계한 나머지 준공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2018. 4.부터 2018. 9.까지 골조, 콘크리트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공정기간 중인 2018. 4. 4.부터 2018. 9. 21.까지 강우량 5mm이상의 우천으로 인하여 16일 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② 2018. 7. 30.부터 2018. 8. 16.까지 최고기온 33도 이상의 폭염이 발생하여 17일 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③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32일 가량 공사가 중단되었고, ④ 피고는 2019. 1.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후문통화로 조성사업을 추가공사로 실시하도록 요청하여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느라 13일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위 각 기간의 합계인 78일은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은 모두 부당하므로 동액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판단

### 가. 공사지연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우천 및 폭염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강우량 5mm이상의 우천이 발생하였다거나, 최고기온 33도 이상의 폭염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거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C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 탈퇴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무렵인 2018. 7. 25.경부터 지분변경계약을 체결한 2018. 8. 27.경 무렵까지 원고들은 계속해서 거푸집 시공 등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해당 기간 중 C의 공동수급체 탈퇴 또는 중도탈퇴로 인한 기성고 산정을 위하여 공사 중단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2019. 1.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후문통학로 조성사업을 추가공사로 실시하도록 요청하여 원고들이 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위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 **나. 지체상금의 감액**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지체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8. 7. 19. 원고들 공사 현장의 감리원에게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및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E 주식회사가 2018. 8. 3.경 폭염으로 인해 2018. 8. 4.부터 2018. 8. 6.까지 3일간 휴무를 실시하기로 통지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으로 후문통화로 조성사업을 추가공사로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추가 공사가 없었다면 공사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4), 피고는 공사가 지연된 이유로 원고들이 2017. 11. 30. 공사 착공 후 69일이나 경과한 2018. 2. 7.부터 기초 PHC 파일공사를 위한 항타기 조립을 시작하였고 골조 공사 과정 중 대표 수급사인 C의 자금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탈퇴 전 대표자 회사인 C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이 분명한데도 C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성금을 전액 인정하였고, 결국 원고들이 공사 지체로 인한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의 내역 및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5) 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피고가 산정한 금액의 8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이 부담하여야 할 지체상금액은 80,683,128원(=100,853,910원×80%), 원고 B이 부담하여야 할 지체상금액은 18,925,672원(=23,657,090원×80%)이 된다.

## 다. 소결론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원고 A에 대하여 20,170,782원, 원고 B에 대하여 4,731,418원이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6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 이행 확인을 위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13.경 원고들에게 지연배상금 부과통지를 하고 준공금과 상계처리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가 지급의 청구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공문 작성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9.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위 지방회계법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연체이자율로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70,782원, 원고 B에 대하여 4,731,4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강태호

- 1) 2차 공사 계약은 2018. 5. 4. 체결되어, 착공일자는 2018. 5. 7., 준공일자는 2019. 1. 23., 금차 262일, 총공사 420일로 되어 있다.
- 2)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인천지방조달청)이 아닌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 등의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를 '피고'로 표현한다.

3) 위 1차 공사 기준 기성고율 16.56%이었는데, 기존 주식회사 C의 50%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위 추가공사가 7일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5) 피고는 2020. 11.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실제로는 2019. 2. 26.경 1차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2019. 2. 7.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보아 1차 공사에 대한 지체 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18일 간의 지체일수를 감경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